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신고 : 즉시 허가 : 15일
이미 신고 (허가)된 외국인 투자내용	① 신고(허가)일			
	② 외국인투자기업 (주식 등 발행기업)	상호 또는 명칭		
		주소 (전화번호:)		
	③ 외국투자가	상호 또는 명칭 (전화번호:)		
		국적		
	④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용	취득총액: 원 (USD 상당)		%
⑤ 하려는(하고 있는 사업)				
변경내용	변경사항	⑥ 이미 신고(허가)된 내용	⑦ 변경 후 내용	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신청)합니다.

[illegible]

신고인 또는 신청인 (또는 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)

하나은행장 귀하

신고(신청)인 귀하

신고(허가) 번호:

[]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. []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. (허가조건: _____)

יחיד

מחלקה

רשימת

하나은행장

은행
장인

첨부서류	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총회, 이사회,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) 사본 1부 (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기존 주식 등의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(양수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외국투자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유익사항

이 신고증명서(허가증명서)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인·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·확인 → 신고증명서 발급 → 수령

신고인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신고인



